



1 근로자편

① 모성보호 급여



· 출산전후
휴가급여



· 육아휴직
급여



· 육아기근로시간
단축급여 등

고용센터 직접 방문없이 인터넷·모바일 - 고용보험시스템 (<https://www.ei.go.kr>)

② 국민내일배움카드



① 카드발급
온라인·유선 가능



② 훈련중도포기
*불이익 없음



③ 출석인정
*확진자·자가격리 대상자,
자녀돌봄 필요한 훈련자

③ 산업안전



· 특수·배치 전 건강진단 유예
①비말 발생 우려가 있는 검사가 포함된 경우
②발열이나 호흡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



·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직무교육
위기경보 해제 후 6개월까지 유예

④ 직업훈련생계비대부



· 3주 이상 직업훈련 참여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
· 기존 대부자는 지속 지원, 신규 대부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



2 구직자편

① 실업급여



· 구직급여 신청

구직급여 수혜 중 감염의심자는 고용센터 의무출석 없이 구직급여 지급(최초 수급자격 신청 시 센터 출석)

· 집체교육 당분간 진행 하지 않으며

① 온라인 ② 고용센터 강의자료 등으로 참석 대체

확진자·격리대상자

· 구직급여 신청 전 최대 3년간 수급자격 신청 연기 가능

· 구직급여 수혜 중 치료·격리기간 7일 미만 → 실업인정일 변경가능
치료·격리기간 7일 이상 → 상병급여 지급

② 취업성공패키지



· 초기상담

대면상담유지
*유선으로 일정 조정가능

· 2회차이후

유선상담 가능

③ 청년구직활동지원금



예비교육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
(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)



지원금 수급 가능

④ 국민내일배움카드



· 발급 및 상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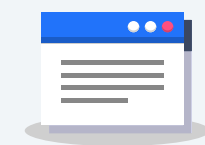
온라인 신청, 유선상담

· 훈련 중도 포기 시 불이익 없음

· 출석인정

확진자, 자가격리대상자,
본인 자녀돌봄 필요 훈련생

⑤ 취업지원서비스



· 대면실시

→ 온라인 유선 제공

· 일자리 정보

→ 전화·이메일 등

· 일부 취업특강

→ 온라인 지원

⑥ 직업생계비 대부



· 기존 대부자 훈련이 중단되더라도 중단 기간 동안 대부 지속 지원

· 신규 대부 희망자 온라인 접수를 통해 대부 신청 가능



3 사업주편

① 고용유지지원금



- **요건 완화** 매출액 감소 없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받은 경우
* 코로나19로 인한 예약 취소, 원자재 수급차질 등
- **지원수준 상향**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·휴직 수당의 1/2~2/3 → 2/3~3/4

② 특별연장근로 신속 인가



-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인력, 마스크·소독약품 생산업체 등
*사후승인 가능

③ 유연근무제 실시 기업 노무비 지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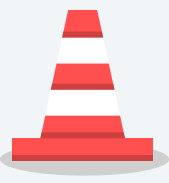
- 중소기업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 지원
- 지원절차 한시적 간소화

④ 근로감독 잠정유예



- 의료기관에 대한 근로감독 유예 (~상황안정시까지)

⑤ 산업안전



-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의 직무교육
→ 위기경보 해제 후 6개월까지 유예

⑥ 외국인 고용허가제



-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기 조정가능
- 재입국 특례자 체류기간 50일 연장 *중국, 태국, 베트남

⑦ 사회적기업 지원



- 인건비 지원금 후지급 → 선지급
- 고용유지조치기업 불이익 조치면제



4 대구·경북지역 특별 추가조치

· 근로자 및 구직자

① 실업급여



· 구직급여 신청

구직급여 수혜 중 희망하는 자는 고용센터 의무출석 없이 구직급여 지급(최초 수급자격 신청 시 센터 출석)

· 재취업활동 4주 2회 → **4주 1회** *5차 실업인정일

*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→ **모두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**

② 산업안전



· 모든 근로자 특수·배치 전 건강진단 유예

④ 고용유지지원금



· 지원수준 상향

사업주가 지급한 휴업·휴직 수당의 1/2~2/3 → 2/3~3/4

⑤ 근로감독

· 사업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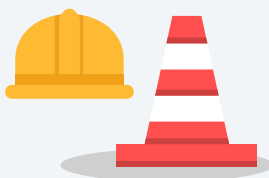


· 모든 사업장 유예

· 진정, 고소·고발 사건

- 2주 간(2.24~3.6)
(전화우편조사 활용)

⑥ 산업안전



· 산업안전감독 유예 산업안전감독 및 재해예방 기관

· 진정, 고발·고소사건 2주간 출석조사 유예, 전화·우편조사 실시

· 보건관리 지도 방문지도가 원칙이나, 유선·서면지도 가능

⑦ 외국인 고용허가제



· 민원 인터넷(<https://www.eps.go.kr>)으로 신청·발급

· 고용센터 방문 필요 시 팩스 접수 후 유선 확인